

통 · 관 · 뉴 · 스

⇨ 관세국경관리연수원-건대 수의과대학 간 MOU체결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탐지견훈련센터)은 3월 17일, 인천국제공항 정부기관단지내에 위치한 탐지견훈련센터에서 건국대학교 수의과 대학과 우수탐지견 양성과 견질병 관련 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기로 합의했다.

본 양해각서의 체결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의 우수한 탐지견 양성을 위한 기술 및 기반 시설을 보유한 탐지견훈련센터와 수의과 대학과의 긴밀한 연구,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탐지견 양성 및 육성발전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인천공항세관, 「시민감시단」초청 설명회 개최

인천공항세관은 월 21일 세관행정 「시민감시단」 위원을 초청, 금년도 중점추진과제와 청렴성 향상 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더불어 위원들은 여행자의 입출국통관 현장과 수출입 통관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세관행정 시민감시단은 세관내부 상하 조직 구성원간 및 세관당국과 관세사 등 주변종사자간에 체결된 청렴약정의 이행수준 등 청렴 실천여

부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토대로 지난해 8월 19일 탄생된 시민참여기구이다.

한편, 세관은 「시민감시단」 제도와 병행해 세관행정의 1차 파트너들인 관세사, 복합운송업체, 보세구역 설영인과 「세관행정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행정절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분석, 세관행정에 적극 반영해 최고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 관세청, 제2차 '민·관 합동지원단' 회의 개최

관세청은 3. 2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한국관세무역개발원·KOTRA·삼성SDS·LG-CNS·KTNET·KT로 구성된 『민·관 합동지원단』과 관세행정정보시스템 수출 및 운영기법 해외전파를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관합동지원단이 3월초 카자흐스탄 관세청을 방문해 펼친,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지원활동의 성과를 자체 평가하고, 3월말에서 4월중 예정된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 및 한-도미니카 관세청장회의를 활용한 세일즈 외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rade Information

⇒ **자율심사업체 수입규모 요건 2000만
불로 하향 조정**

자율심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율심사업체의 수입요건이 하향 조정되고 취소요건이 마련됐다. 또 효율적인 체납방지 및 책임관리 구현을 위해 체납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관세포탈·부정환급 등 범칙사범에 대한 추정업무가 효율화 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개정, 3.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능력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입규모, 법규 준수도 등을 조정키로 했다. 특히 지정요건 중 수입규모 요건을 하향 조정(2년 연평균 3,300만불 이상 → 2,000만불 이상)하고, 신청업체가 지정 목표수 보다 많을 경우 법규준수도, 업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키로 하는 등 자율심사업체의 지정 취소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밖에 관세법 개정(법률 제7581호, 2005.7.13.)으로 인해 관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사항이 반영됐다.

⇒ **3월 23일 국내 최초 시판용 미국산 쌀
수입**

지난 3월23일 국내 최초로 시판용(밥상용)

미국산 쌀이 부산항을 통해 수입됐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 유예로 의무 할당량을 수입해 오고 있으나 시판용으로 수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번 수입쌀은 미국산 1등급 칼로스 로스로 부산항 감만부두를 통해 1천327톤이 들어왔다. 이번에 도입 물량은 미국 총 도입량 5504톤 중의 일부로서 잔여물량(4131톤)은 3~4월중으로 들어올 계획이다.

칼로스 쌀은 10kg과 20kg 단위로 소포장된 상태로 수입돼 부두내 야적장에서 식물검역과 규격심사 등 통관절차를 거쳐 경기도 이천의 농수산물유통공사 창고로 운반된다. 내달 공매를 통해 시중에 판매될 예정이다. 검역 및 통관절차 등에 1주일 정도가 소요돼 4월초부터 백화점, 대형 할인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판매될 것이라고 한다.

쌀의 HS code는 1006.30-1000이며 기본관세 5%가 적용된다. 수입시 식품위생법과 양곡관리법에 의한 요건획득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며 쌀은 농림부장관이 허가가 있어야만 수입이 가능하다.

금번 수입된 미국산쌀은 관세화유예에 따른 국내 의무수입물량으로 관세없이 수입됐다.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시판되는 수입 쌀은 미국산외에 중국산이 만2천767톤, 태국산 3천293톤, 호주산이 993톤으로 중국쌀과 태국쌀은 5월까지 국내에 들어와 5월에서 6월 사이에 시판되며, 호주쌀은 아직 도입과 시판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㉟